

시설격리 동의서

성명 Name(姓名, 氏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生年月日)
국적 Nationality(国籍)	선박·항공기명 ship·Flight No. (船舶, 航空, 航空便名)
여권번호 Passport No. (护照号码, パスポート番号)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 (到達日期, 到着の日付)

< >

1. 2021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모두)는 “PCR 음성확인서” 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2. 격리시설은 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이동에는 별도 차량이 지원됩니다.
3.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2만원 기준 총 168만원이며, 시설입소 전까지 사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하신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합니다.
6.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진단검사가 제공됩니다.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합니다.

<제출대상 및 미제출 시 불이익>

1.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입국 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격리조치를 거부(입소비용 미납 포함)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시설 격리>

본인은 “PCR 음성확인서” 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에 따라 입국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서 14일 간의 격리조치를 받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비용 납부>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14일 간 시설 격리로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1인당 KRW 1,680,000)을 입국 시 전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출국 조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14일 간의 시설 격리 및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납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출국명령 등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	년	월	작성인	(서명 또는 인)
Date	일		Completed by	(簽字, 作成人)
	(日期, 作成の日付)			(Signature)
	(MM/DD/YYYY)			

대한민국 정부 귀하